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·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,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이 개정(법률 제18904호, 2022. 6. 10. 공포, 2022. 12. 11. 시행)됨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의 수립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(이하 “작성지침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1. 관측시설의 운영관리 목적
2. 관측시설의 장소, 관측환경
3. 관측요소, 관측장비 규격
4. 관측시설을 설치, 교체, 이전하는 경우 관측자료 수집체계, 전송방식 등
5. 관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의 보관방안
6. 그 밖에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관측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관측시설 수

2. 관측시설의 장소

3. 그 밖에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검토·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8조제3항”을 “법 제8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) ①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설치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1. 관측시설의 설치 목적 2. 관측시설의 설치 장소(위도·경도 및 해발고도 등) 3. 관측시설의 설치 일정 4.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 5. 관측시설의 운영방식 6. 관측시설의 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및 송수신방식(기상관측자료별 실시간 송수신 여부를 포함한다) 7. 관측시설에서 관측하는 기상요소 8. 관측시설에 설치되는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의 규격 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교체(관측시설에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려는 경	제4조(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의 수립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(이하 “작성지침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②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 1. 관측시설의 운영관리 목적 2. 관측시설의 장소, 관측환경 3. 관측요소, 관측장비 규격 4. 관측시설을 설치, 교체, 이전하는 경우 관측자료 수집체계, 전송방식 등 5. 관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의 보관방안 6. 그 밖에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측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

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교체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관측시설 교체 목적
2. 관측시설 교체 내용
3. 관측시설 교체 일정

③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이전(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이전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관측시설 이전 목적
2. 관측시설 이전 장소(위도 · 경도 및 해발고도 등)

3. 관측시설 이전 일정

④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폐지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관측시설 폐지 이유

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2. 관측시설 폐지 일정

3. 당해 관측시설에서 수집된
기상관측자료의 보관방안

<신 설>

제4조의2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
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기상
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
수립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
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
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
다.

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
라 통보받은 기상관측망 구축
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
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
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관
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의 변
경계획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
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관측시설 수

2. 관측시설의 장소

3. 그 밖에 관측시설 구축 및 관
리에 필요한 사항

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
출받은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
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검토·

제5조(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) ① 기상청장은 <u>법 제8조 제3항</u>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. ② (생략)	<u>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</u> 제5조(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) ① ----- <u>법 제8조의 2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